

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1. 10. 17. (월) 10:00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목 차 】

1.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1 면
2.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면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0. 4.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0. 4.

2.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다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함
- 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목적 및 추진방향, 식재수종,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다.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가로수관련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 라. 가로수 수종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은행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 마. 도로, 도로시설물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등
- 바.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관리

- 사. 식재에 따른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관련 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별지서식)
- 아.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 작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2011. 8.18. ~ 9.09.)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2조(목적, 적용범위)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는 군수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3) 안 제4조~제8조(가로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수당)는 가로수위원회의 설치방법 및 기능, 존속기한과 임기, 그리고 회의와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안 제9조(수종의 선정)는 가로수의 식재수종을 망라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5) 안 제10조(협약)는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토록 규정한 조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6) 안 제11조~제12조(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할 시 비용부담 방법과 그 부담금의 징수방법을 명시한 것으로서 필요사항으로 판단됨.
- (7) 안 제15조~제18조(점검, 주민참여, 보고, 관리대장)는 가로수의 연 1회 이상 점검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8)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81호, 2011. 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

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12.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숲(톱밥숲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7호, 2011. 3.30, 일부개정]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별표 10] <개정 2008.6.2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삭제 <2008.6.20>

나. 바뀌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과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할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로의 길어깨
-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 폭(樹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 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					구 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 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 타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8일
산 립 청 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2. “수관고”라 함은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3. “지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가슴높이지름”이라 함은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에서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가슴높이지름 합의 70% 가 당해수목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가장 굵은 줄기의 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5. “근원지름”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6. “수관폭”이라 함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제3조(가로수관리청) ①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가로수관리청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

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5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①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 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②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③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식재 제한지역)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구간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가로수 관리

제8조(바뀌심기와 메워심기)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7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병해충 방제) 병해충 방제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지형과 토양보전) ①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규칙 제24조 별표 10의 제6호에 따른 식재 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편지식 또는 현수식 도로표지 전방의 수고 5미터 이상의 가로수는 적정수종으로 갱신하거나 제거 또는 적기에 가지치기 시행
2. 복주식 또는 단주식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적정수종으로 바뀌심기 또는 적기에 가지치기 시행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보수시에 별표 5와 같이 설치한다.

제14조(점검) 규칙 제24조 별표 10 제13호에 따른 점검 중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대장) 규칙 제24조 제4호의 가로수관리대장은 별표 6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가로수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가로수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가로수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관리청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	

[별표 2]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

구 분	방향 표지	기타 표지
도시지역	40m	40m
기타지역	70m	40m

비고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광역시와 시지역 중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 전 지역을 말하며 “기타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표지 전방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가. 갓길 끝에서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할 경우
- 나. 최대수고 4m이하의 소교목이나 관목류의 경우
- 다. 가지치기 등 타 방법을 통하여 가로수가 도로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이 마련된 경우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p>1. 대상</p>	<p>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p>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p> <p>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p> <p>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p> <p>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p> <p>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p>
<p>2. 시기 및 횟수</p>	<p>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p> <p>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p> <p>다. 기타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p>3. 방법</p>	<p>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p> <p>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p> <p>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p> <p>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p> <p>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p> <p>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p> <p>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p> <p>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벗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앓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p>4. 절단면의 처리</p>	<p>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p>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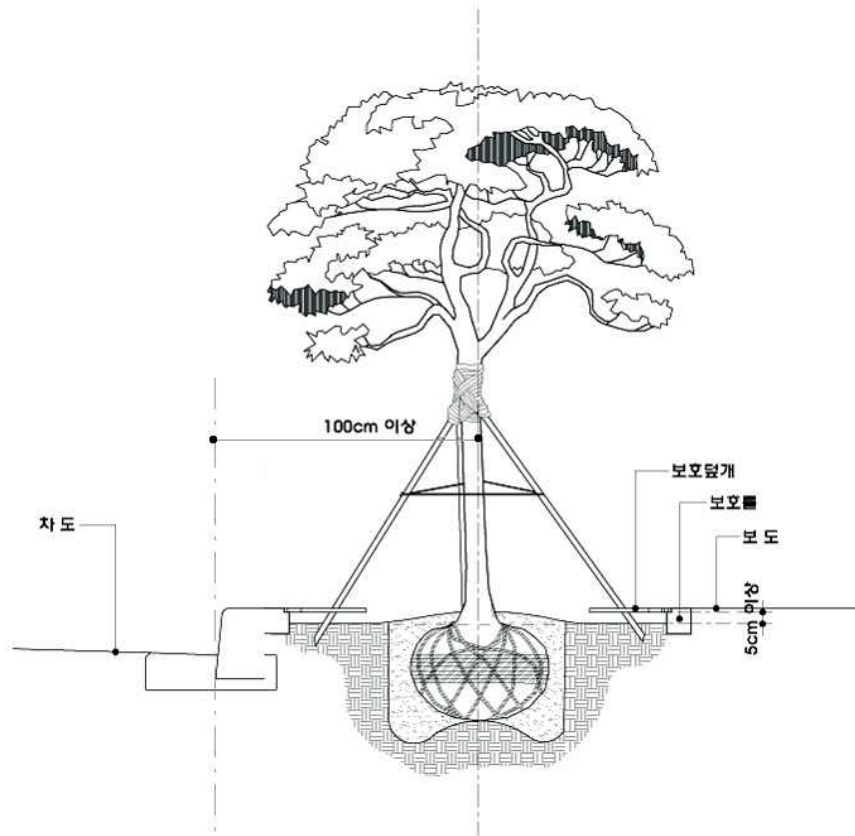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동·식물, 수질과 토양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한다.

[별표 5]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5-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가.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5-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가. 보호틀

- 1)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2)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 3)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4)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5)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호덮개

- 1)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 2)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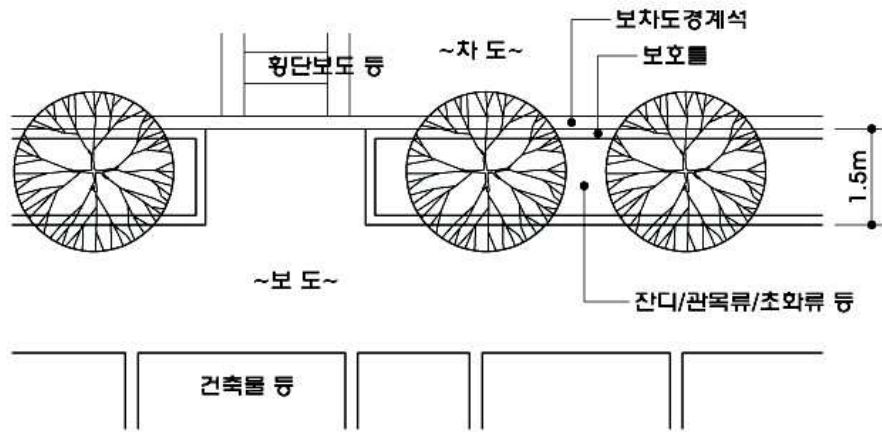
다. 보호대

보호대는 보행자나 교통에 의해 가로수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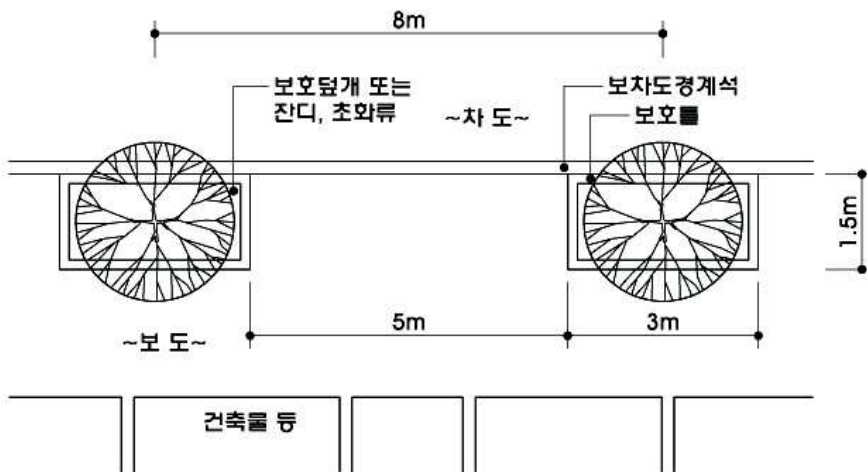
마. 통기·관수시설

통기·관수시설은 답압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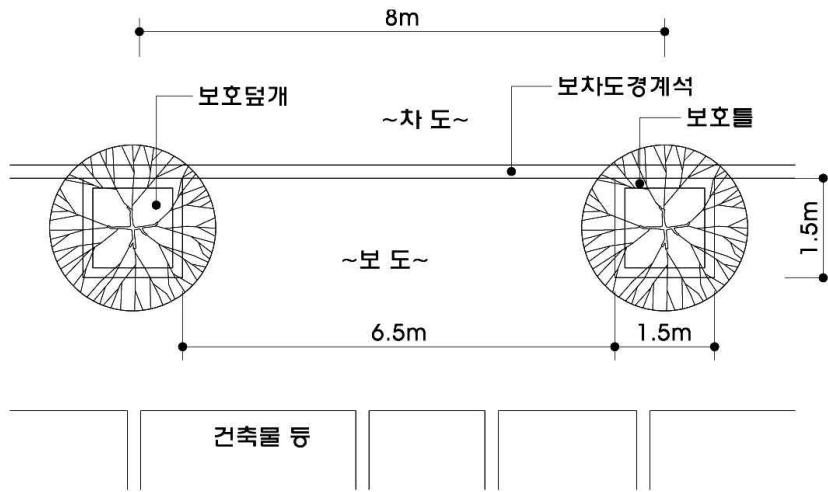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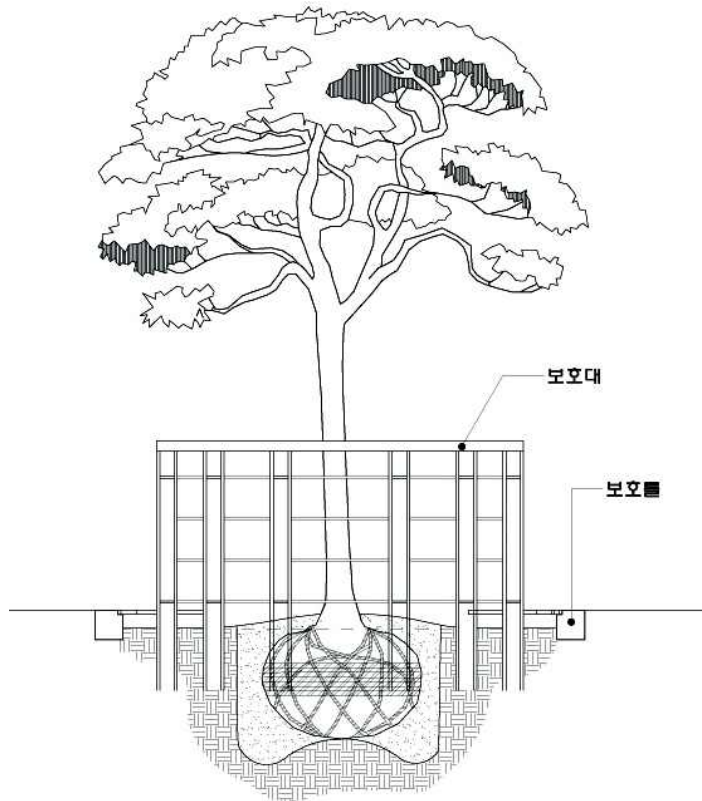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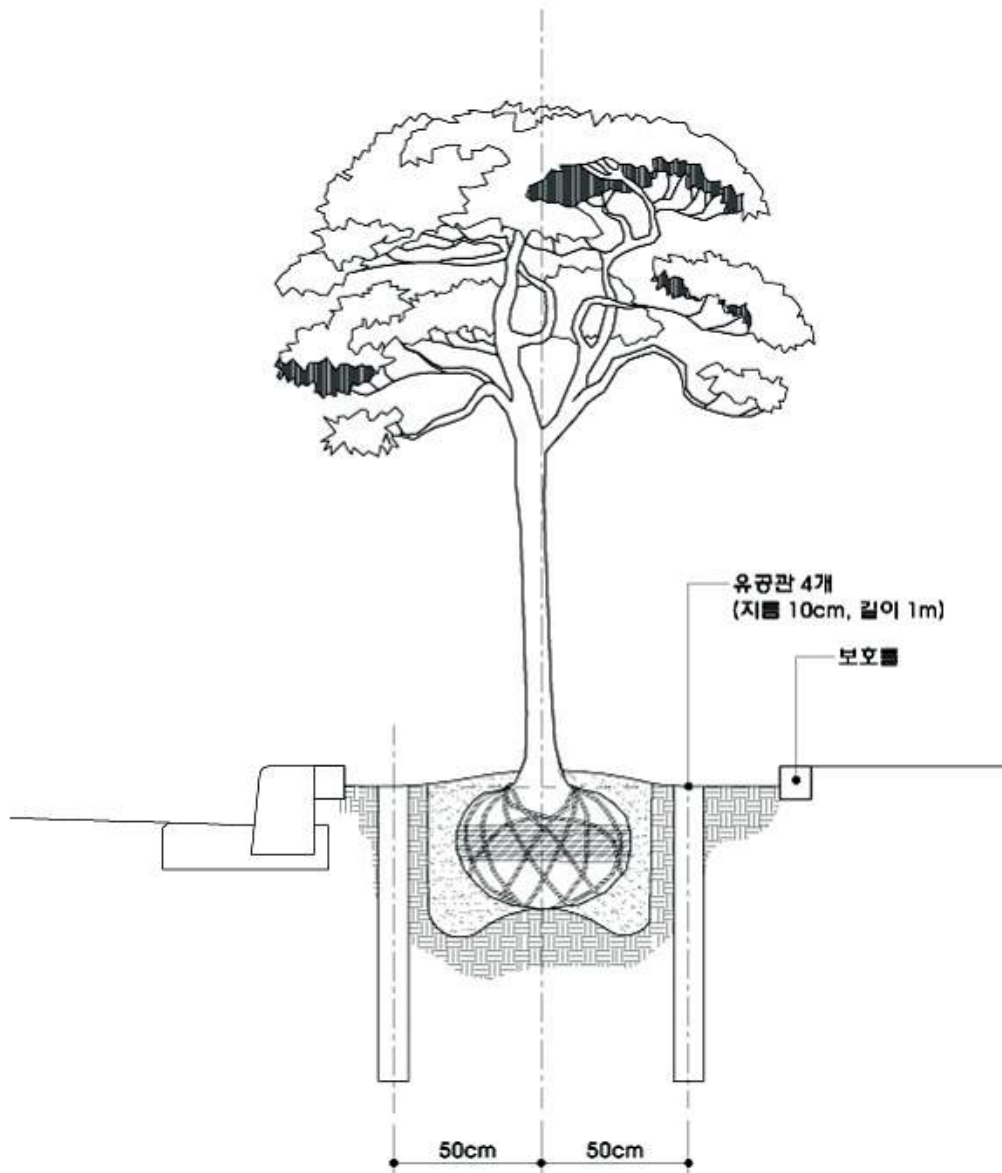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 o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시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 o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쇠석으로 채운다.

<지주대 설치의 일반>

가.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으로 설치한다.

다. 수고 4.5m 이하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라.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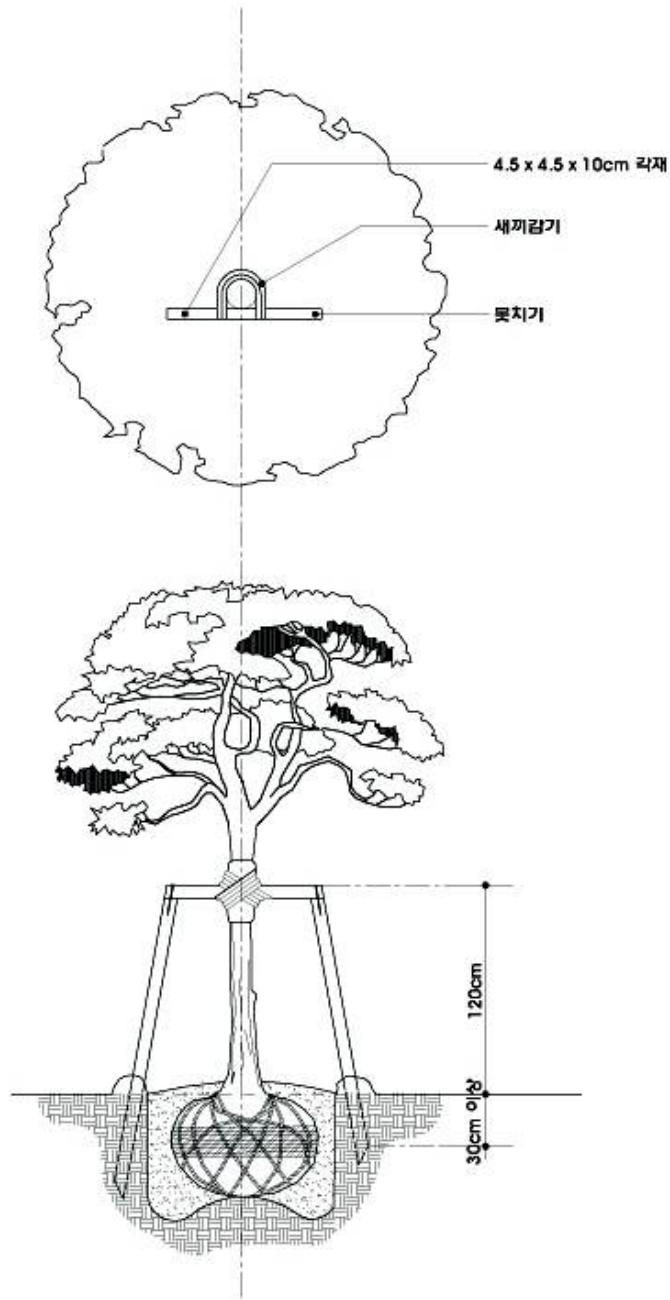
마.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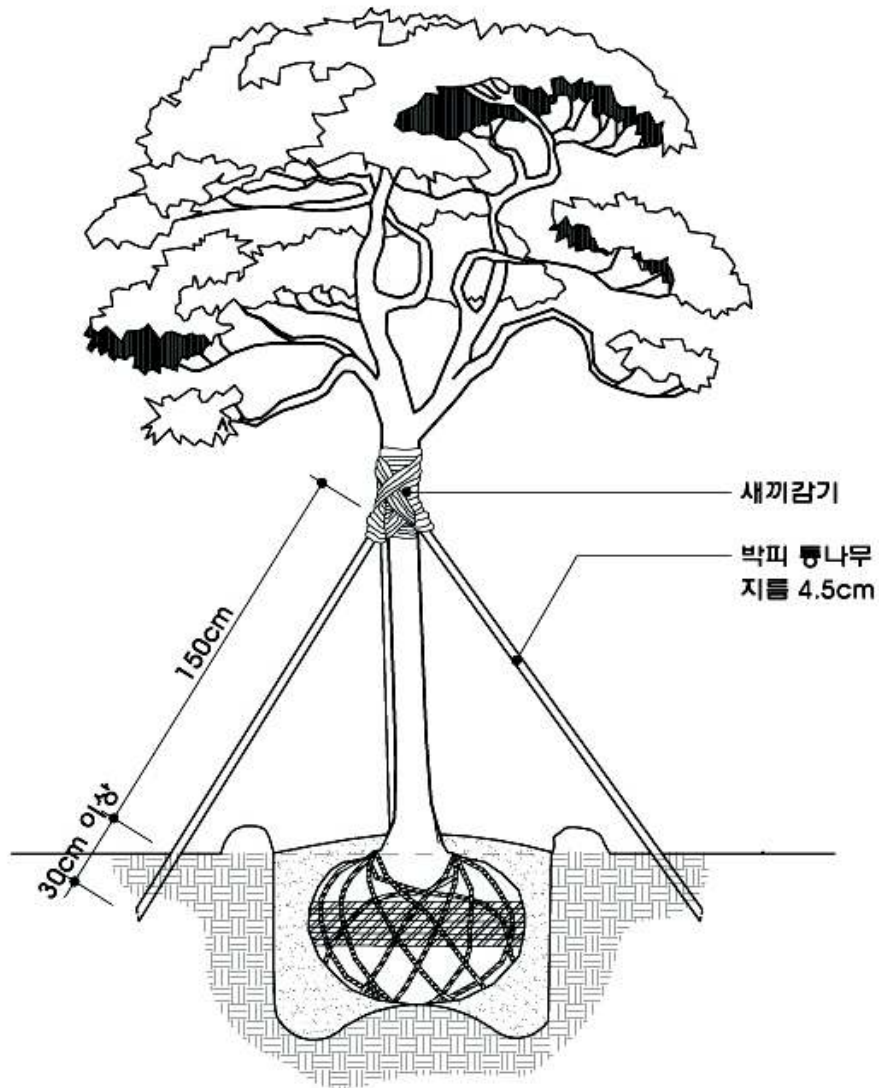
아.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성장에 따른 수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각지주대 설치(예)>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며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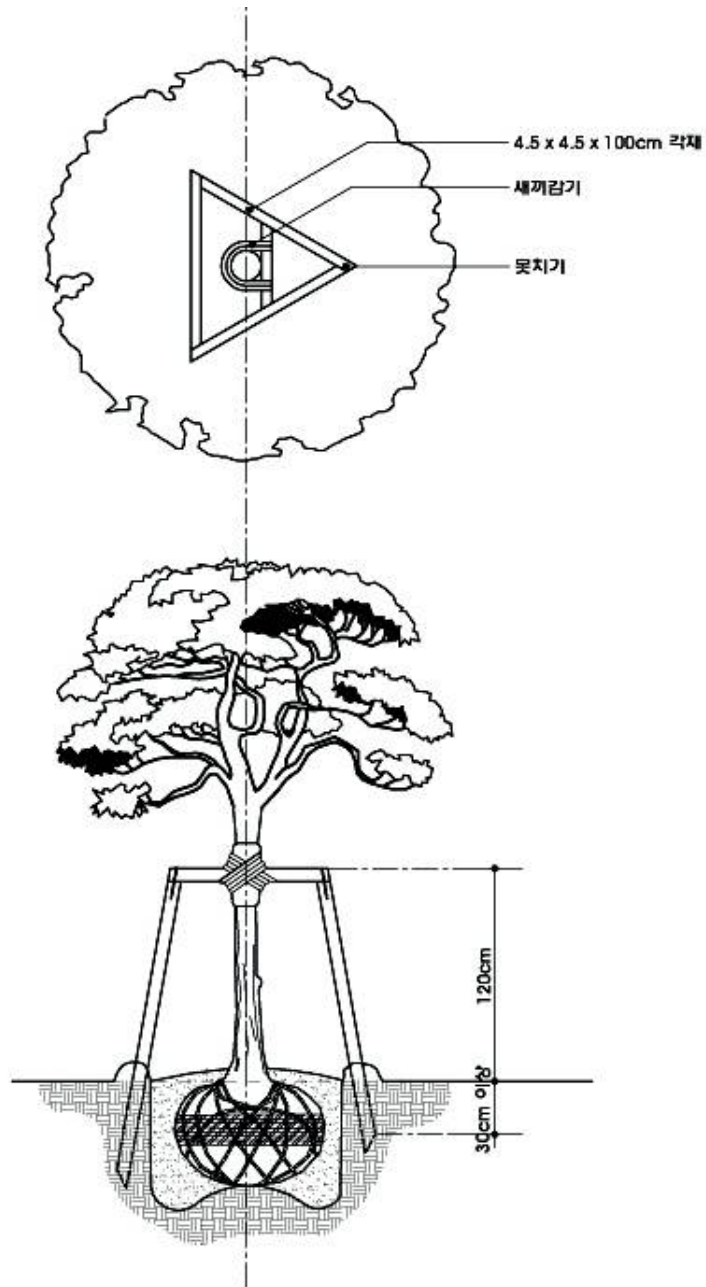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가. 삼발이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하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는 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걸쳐 구간을 안정시킨다.

나. 삼발이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5m 이상의 수고일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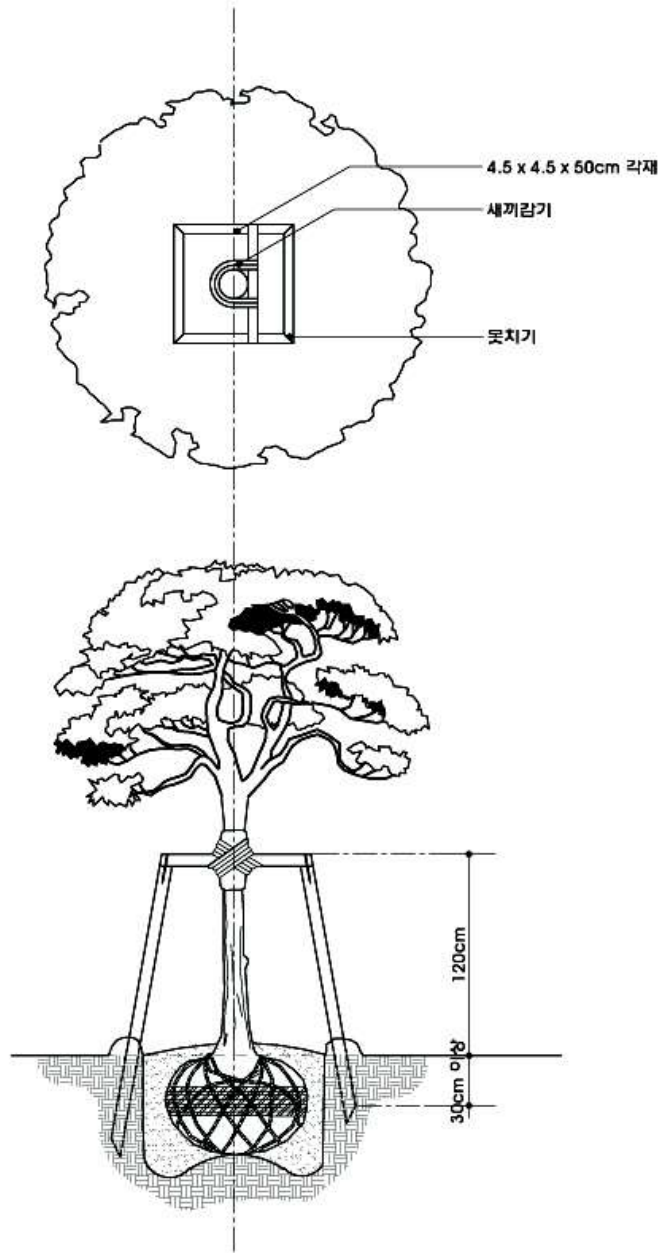
<삼각지주대 설치(예)>



가. 삼각지주대는 삼발이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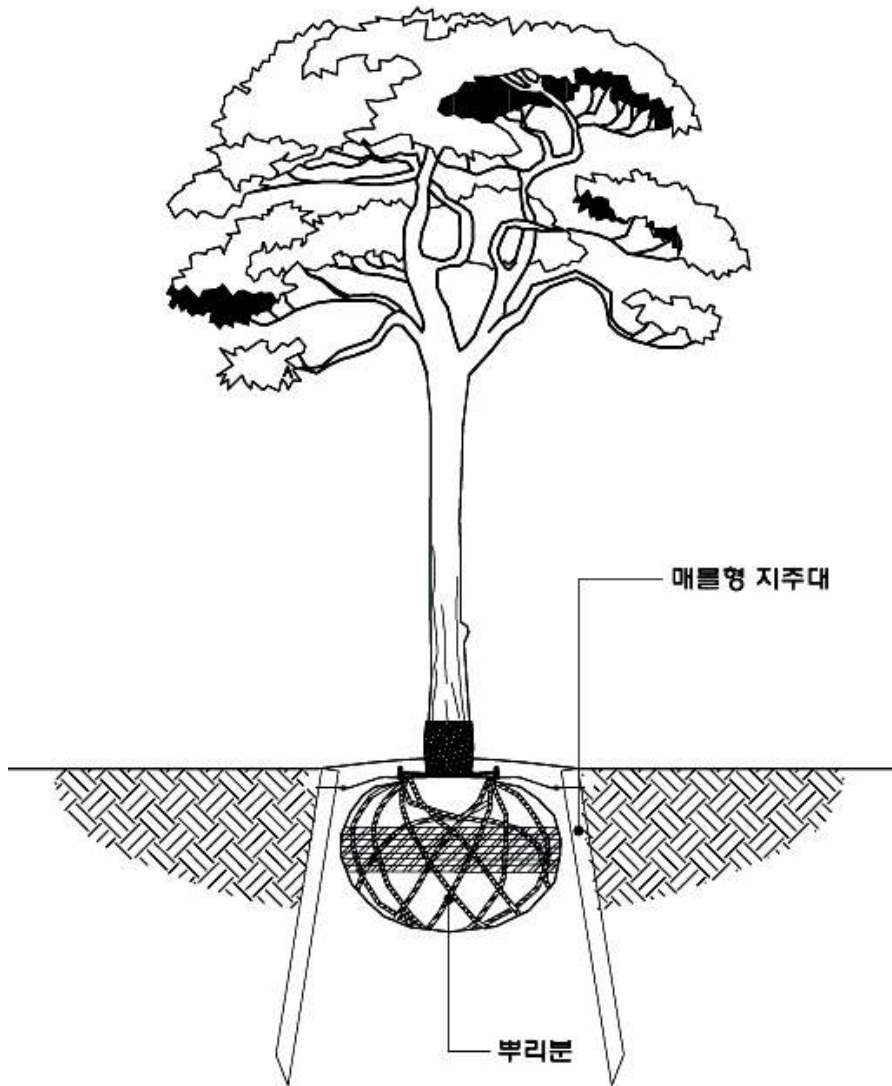
<사각지주대 설치(예)>



가.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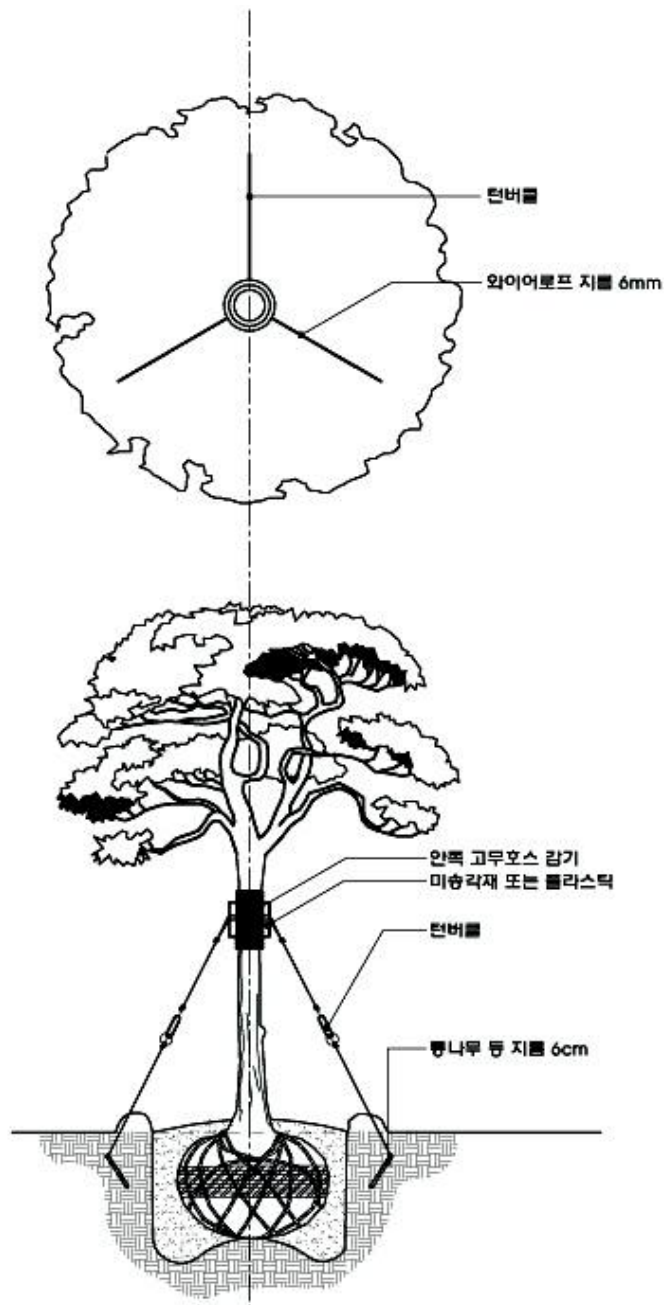
나.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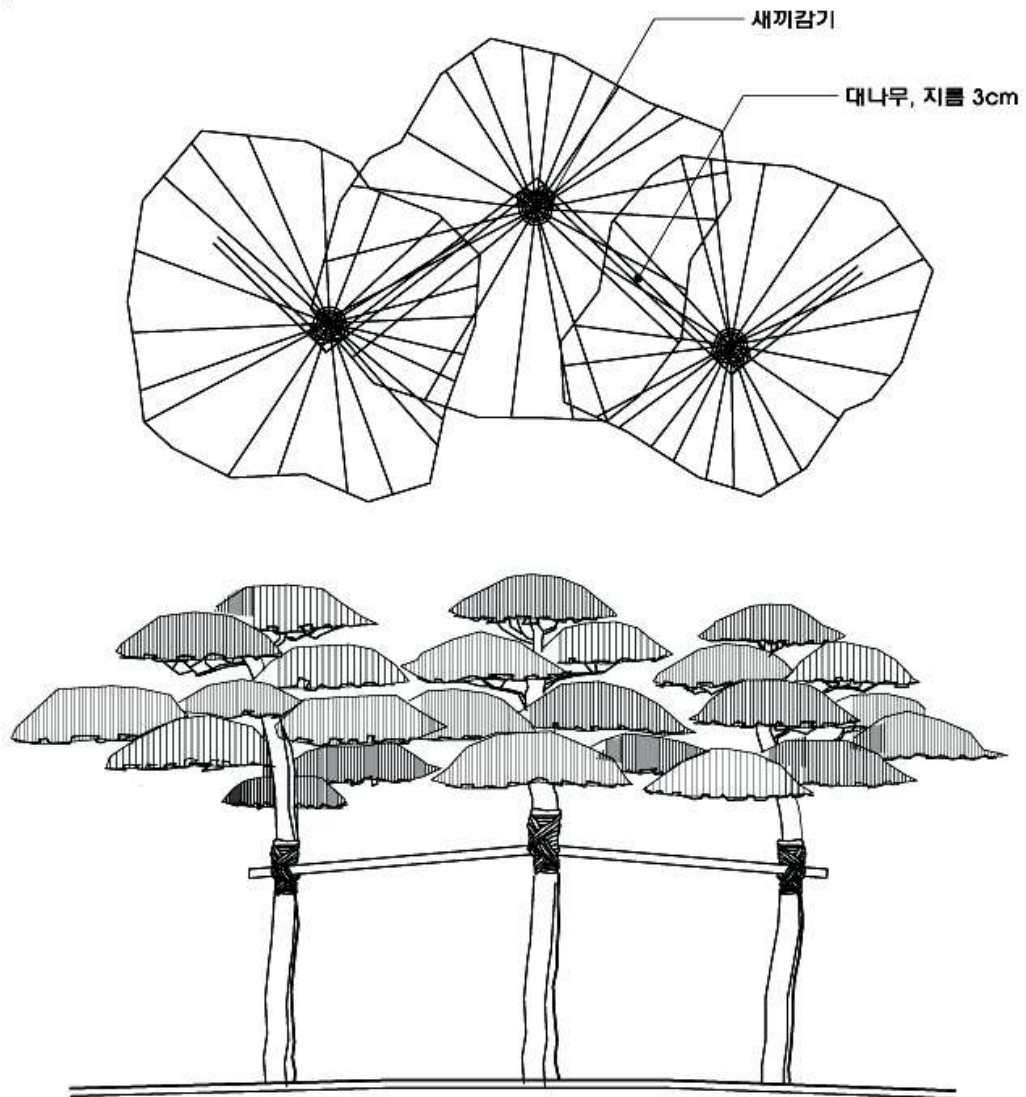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가.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군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6]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요령

1. 도로노선명, 구간, 도로종류, 도로폭 기재요령
 - 가. 가로수 식재지의 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입
 - 나. 도로의 좌측, 우측, 중앙분리대별로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
 - 다. 도로노선명은 코드화 되어 있을 경우 코드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00간선, 000지선으로 기재
 - 라. 구간은 시점과 종점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도로의 종류는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 등으로 기재
 - 마. 좌우측은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을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기재 좌/우측을 기재
 - 바. 연장은 도로의 길이를 m단위로 기재하고 도로폭은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각각의 폭을 m 단위로 기재
2. 가로수 조성현황 기재요령
 - 가. 최초 신규조성된 가로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식재위치는 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전구간, 중앙분리대, 000m 교통섬, 길어깨 끝, 성토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다. 식재거리는 가로수 식재 총 연장거리를 기재
 - 라. 식재유형은 단열식재, 병렬식재, 3열식재, 군식, 혼식 등으로 구분
 - 마. 보호틀 유형은 대상형(여러 가로수를 하나의 보호틀로 설치한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관목류의 군식의 경우) 등으로 구분
3.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 기재요령
 - 가. 가로수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최초 신규조성 수종을 우선 기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로수 증감 내역에 따라 가감
 - 다. 증감내역과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수종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기재
 - 라.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4.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기재요령
 - 가. 가로수 관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작성
 - 나. 최초 신규조성 관리시설을 우선 기재
 - 다. 각 관리시설의 설치(보수로 인한 설치 포함), 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 라. 각 노선별 별도 관리시설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기재
 - 마.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기록

□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0. 4.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0. 4.

2. 제정이유

- 군의회의 주문사항과 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로 함

나. 피해농업인의 용어 개정(안 제2조제5호)

- 피해농업인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서
⇒ “군 내에서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한 농업인”으로 변경
※ 도 권고사항 반영

다. 농작물·인명피해 보상요건을 통합하고 완화함(안 제3조)

- 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함
 - 최저 피해면적 기준: 330제곱미터 이상 ⇒ 삭제
 - 최저 피해금액 기준: 30만원 이상 ⇒ 삭제
- ※ 군의회 주문사항 반영 및 도 권고사항 반영

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4항)

- 농작물 피해: 최대 500만원
- 피해보상액 산정 곤란시 피해보상액 조정
- 인명 피해: 최대 50만원

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

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4.4시행)의 개정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함

-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함(현행조례 제8조, 제12조)
-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현행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별지서식에 근거 조례명 및 용어 순화, 구비서류 등 수정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민법」 제779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나. 예산조치: 2011년도 예산확보

- 농작물피해 보상예산: 49백만원
- 인명피해 보상예산: 6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1. 8. 1 ~ 8. 21): 특기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권고사항과 거창군의회 의원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를 위하여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장 (총칙)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2장(농작물의 피해포상)은 피해액 산정기준과 피해포상액 산정,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그리고 피해보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안 제3장(인명피해 보상)은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과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4)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24, 타법개정]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

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31] [환경부령 제404호, 2011. 3.31, 일부개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내역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49호, 2011. 3. 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1. 9.10] [법률 제10450호, 2011. 3.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10] [법률 제10448호, 2011. 3. 9, 일부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거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경상남도 시·군 관계관 회의 주요내용」

- 2011년말 까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개정
- 피해농가 거주지 제한을 완화 또는 삭제
- 최저 보상 피해면적 및 금액 제한 등을 완화 또는 폐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1.4.4]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2011.4.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2조 ~ 제10조) (생략)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내역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의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 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17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 8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수정

○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제2조)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기한 변경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기한이 최근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기한 변경(제7조제1항)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 삭제

○ 상위법령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에서 해당 규정 삭제(제12조제2항)

※ 현행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 여부 판단 가능

○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제4장)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작물별 피해액 산정기준

분 야	과 수 분 야	전작물(벼 포함) 분야
피해면적	○ 표준 재식면적 × 피해주수	○ 가로 × 세로
피해율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다음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00% ▪ 1/3이상 ~ 2/3 미만 피해를 입는 경우 : 90% ▪ 1/3미만 피해를 입는 경우 : 80% · 성장단계별 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생 이상 : 100% ▪ 3년생 이상 ~ 5년생 미만 : 90% ▪ 3년생 미만 : 80% 	○ 성장단계별 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 : 90% ▪ 수확단계 : 100% ▪ 대파가능단계 : 50%
피해액 산출기초	○ 피해주수 × 1주당 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